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 강화〉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0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221635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및 물류창고업 등록요건 의무화(안 제7조 등)	2

□ 윤중오의원 대표발의(221635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중오 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1. 27.
3. 회 부 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및 물류창고업 등록요건 의무화(안 제7조 등)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및 물류창고업의 등록요건으로 냉·난방 설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는 것 <u><후단 신설></u>	3. -----, 이 경우 다목의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류창고의 구조, 설비 또는 입지	③ -----

가. 검토의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 사업을 말하며,¹⁾ 등록기준으로 ①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결될 것, ②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시설을 갖추는 것, ④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²⁾ 등록기준으로는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하여야 하고,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 창고시설 또는 주문배송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요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는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물류창고업의 등록요건(「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중 주문배송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4.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면(해당 기준에 따라 확보할 주차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

나. 다음의 입지기준을 충족할 것

- 1)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등”이라 한다)에 연접하지 않을 것
-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안은 등록단계에서부터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등록기준들은 물류시설 용지 및 합리적 배치·운영 등을 중심으로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는 점, 열작업환경에서 물류 종사자가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³⁾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물류시설의 개발·운영 및 물류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목적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물류시설을 포함한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매일경제, 「“에어컨 틀어도 숨막혀요”...40도 육박 물류창고선 폭염과 전쟁」, 2023.8.3.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취지와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 작업환경 보장을 위한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장치의 가동,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7. 17.>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7. 17.>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2조(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등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법 제39조제1항),⁶⁾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법 제168조)⁷⁾ 이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167조)⁸⁾ 고열·폭염 장해 등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6)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8)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⁹⁾에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이처럼 근로자 작업환경 보장을 위한 의무와 제재수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내에서 해석·적용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의 해소 및 규율 체계의 일관성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을 개별 법률에 규율하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냉·난방 설비의 설치기준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냉·난방 설비 설치 의무화는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류업체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업 사업자는 물류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 임대 목적, 성격, 물품의 종류, 운영 방식에 따라 작업자의 위치·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고정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복합물류터미널은 사업자가 입주기업에 물류시설을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하므로, 임대 목적·면적·물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며, 물류창고는 취급 물품 특성(저온, 냉동 등), 주요 물류 기능, 자동화 수준 등 운영 중인 시설 유형이 다양하여 근로자 작업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비 등 설치 기준을 물류창고 시설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높은 층고, 개방형 도크 등 물류창고의 구조적 특성으로 냉·난방 설치 및 운영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비 상승, 중소·영세 물류창고업자 부담 등 우려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해양수산부 의견

물류창고 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환기 및 냉·난방 설

비의 설치 기준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냉·난방 설비 설치 의무화는 이중 규제이며, 이미 등록 후 운영 중인 중소·영세 물류창고에 대한 냉·난방 설비 설치 의무화는 3년의 경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으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이해관계자 의견

(주)한국복합물류 :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개정 반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물류창고 등 물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입주기업에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 - 물류창고 근로자 고용 주체는 물류창고업 등록자로,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 설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통합물류협회 : 물류창고업 관련 개정 반대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 임차 사용이 대부분으로 냉·난방설비 등 설치를 위해 창고 소유주와 협의 어려움 예상. 물류창고업자의 운영 방식에 따라 작업자 위치·동선 등이 변경되므로 소유주가 건축시 고정설비로 냉·난방 설치하는 어려움 - 높은 층고·도크 상시 개방 등 물류창고 특성 상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온도 유지가 어려우며,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설치·운영 비용(유지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중소물류업체 부담 및 물류비 상승 우려

문 의 처

02)6788-5580